

DDA, 2007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신 유 선*

지난 7월 17일 WTO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쟁점별로 타결 가능한 합의수준(Landing Zone)¹⁾을 좁혀서 제시한 세부원칙²⁾ 초안을 배포하였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참여를 촉구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국 심층회의³⁾ 및 비공식 전체회의⁴⁾ 등이 진행되어 동 초안내용에 대해 각 국가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전 협상은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⁵⁾ 개수 등 주요 수치에 집중되었던 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hynys@krei.re.kr 02-3299-4287

- 1) 협상을 오래하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가정할 때 협상 타결 예상 수치가 감이 잡히게 된다. 물론 그 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 수치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비유해서 landing zone이라고 한다.
- 2)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3)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여 개국이 참가한다.
- 4) WTO 회원국이 참가한다.
- 5)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

면, 9월, 10월 협상에서는 세부원칙 초안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⁶⁾.

이에 따라 그동안 논의가 미흡했던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⁷⁾, 수입쿼터(TRQ) 관리방안⁸⁾, 경사관세⁹⁾, 열대작물¹⁰⁾ 등 기타 이슈들도 모두 논의되었다¹¹⁾.

11월, 12월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및 경사관세 등 시장접근 이슈에 대한 논

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6) 김민아,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국제농업소식지 11월호, 2007. 11.
- 7)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8) 각국별로 수입쿼터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수입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터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 이라고 한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 9)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10)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11) 이번 협상에서는 각 국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비해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EU는 최근 협상과정에서 관세감축율과 관련하여 민감품목 등에서 일정 요구가 반영된다면 최상위구간 감축율을 70% 수준까지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상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도 지난 9월 협상시 국내보조 감축율과 관련하여 기존 53% 감축입장을 진전시켜 세부원칙 초안에서 의장이 제시한 66~73% 감축 수준 내에서 협상할 용의를 표명하며 협상테이블로 나섰으며, 현재 주요 12개국(G12)을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각 이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와 더불어 식량원조¹²⁾ 등의 수출경쟁 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다. 특히 12월 16일에는 G10 회원국에 회람된 G20의 관세상한 등 6개 이슈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12월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선진국·개도국 및 수출국·수입국간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시장접근 분야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이 여전히 존재하였다¹³⁾.

1. 협상 동향

12월 3일 비공식전체회의에서는 Room E¹⁴⁾협의 일정 및 논의내용이 소개되

-
- 12)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재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 방향이다.
- 13) G20, G33은 2007. 11.15. 각료급 협의를 개최하여 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해가 반영된 균형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G33, G10, G12 등 주요 이해 관계그룹은 지속적으로 특별품목, 민감품목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14)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쿠바(G-33,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G-20), 인도네시아((G-33,G-20,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SVE,ACP), 일본(G-10), 케냐(G-33,아프리카,ACP), 한국(G-33,G--10),레소토(LDC,아프리카,ACP), 모리셔스(G-33,ACP,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G-20,G-33), 파나마(G-33,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G-20,열대작물), 필리핀(G-33,G-20,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

있고, G33¹⁵⁾ 핵심 7개국 회의에서는 민감품목(SP)에 대한 의장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G33 전략이 논의되었다. G10¹⁶⁾ 회의에서는 민감품목 소비량통계 및 관세단순화¹⁷⁾ 등이 논의되었다.

12월 4일 G33 소규모 실무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전달할 G33 입장이 작성되었고, Room E협약과 G10 회의에서 관세단순화가 논의되었다.

12월 5일에는 G33 핵심그룹회의, Room E협약, G10 회의, 한, 호주 양자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관세단순화, 민감품목, 경사관세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날인 6일에는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다.

12월 7일 Room E협약에서는 경사관세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핵심7개국 대사급회의에서는 민감품목(SP) 옵션 페이지가 상정되었다.

12월 11일 G33 전체 HOD회의와 13일 G33 HOD회의에서는 민감품목(SP)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 카,LDC,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G-20), 미국, 베네수엘라(G-33,열대작물,G-20).
- 15)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6)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 17)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종가상당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452ro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이다.

12월 16일에는 G10 회원국에 회람된 G20의 관세 상한 등 6개 이슈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12월 17일 G33 핵심그룹회의에서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고, 19일 일반이사회에서는 G33 민감품목(SP) 옵션페이퍼 소개 및 G33 공동발언문이 발표된다. 그리고 12월 21일까지 일부 이슈에 대한 작업문서를 배포하여 1주간의 검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2. 주요 협상 내용

2.1.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에 대한 논의

12월 7일 G33 핵심 7개국 대사급회의에서 민감품목 소비량 통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실무그룹(Working Group)차원의 논의내용을 요약한 별첨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중 제조품의 소비량산입문제, 양허표기재시 TRQ 통합(aggregated TRQ 또는 single TRQ) 문제, 소비량 하한(Floor)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의장은 동 문서를 토대로 주요 이슈들을 우선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출국들은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Partial Designation)을 제조품에도 적용시 소비량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별첨 뉴질랜드 페이지).

이에 수입국들은 소비량 하한에 최소 TRQ증량치 인정 개념을 도입하는 데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품 문제, 양허표기재시 TRQ 통합(aggregated TRQ 또

는 single TRQ), 소비량 하한(Floor)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Partial Designation)을 통해 TRQ증량의 기대수준(Level of Ambition)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Partial Designation) 방안을 통해 제조품에 소비량이 할당될 경우의 무역왜곡 문제를 별첨 문서로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품의 경우 Tariff Coverage를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소비량 하한의 경우 Global Safety Net을 통해 구체적 증량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EU는 소비량 하한, 제조품 구간경계(Threshold)¹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별첨 미국측 문서에 제시된 문제점들은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Partial Designation)뿐만 아니라 구간별 접근(Sectoral Approach)에도 해당된다고 점을 지적하였다.

소비량 하한 문제는 무역량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를 다루는 것이지, 구간별 접근(Sectoral Approach)를 교묘하게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EU는 쇠고기, 가금육 등에서 서로 다른 품목이 동일 TRQ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경우 single TRQ를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제조품과 관련해서는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Partial Designation)을 통해 세번을 제외하면서도 동 세번에 대한 소비량은 유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18)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를 더 많이 깎기로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관세가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률이 70%이고 50%p인 관세는 60%를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후 30%p가 되고 50%p인 관세는 관세감축후 20%p가 된다. 이렇게 높은 간세에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려면 구간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관세수치를 구간경계라고 한다. 지금까지 논의결과 구간 수는 4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하였다.

일부에서는 Coverage문제, 제조품문제, 소비량 하한, 통계부재 문제 등을 우선순위로 거론하였다. 특히 소비량 하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lobal Safety Net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Full Cut을 하는 세번에도 TRQ 증량을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기본골격 Mandate에 위반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일각에서는 Mandate는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이라는 반박이 있었다. 또한 원료품과 제조품의 교역비중에 따라 Under 또는 Over-representation이 모두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품목에 상당히 많은 세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간경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실무그룹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여 내년 1월 협상 이전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2.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분야에 대한 논의

허용보조(Green Box)¹⁹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개도국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를 위한 공공비축(Public Stock Holding, 주식 5)에 대하여 일부 문안을 조정한 후 허용보조보다는 농업협정 6.2항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주식 5 내용은 유지할 것이라고 하고 6.2항을 쓰지 못하는 신규가입국(RAM)²⁰들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작업문서(Working

19)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의 보조금은 감축 의무가 없는데, 이를 허용보조(Green Box)라고 한다.

Document)를 통해 구체적인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반응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para 6와 관련하여 고정·불변, 예외적 업데이트 조항이 Single Farm Payment 운영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연호 캐나다 제안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일각에서는 캐나다 제안서가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제안서이지만 다만, para 6의 수혜자격의 배분(Allocation of Entitlement)은 보조금 지급 조건(Criteria)과 연계되어 있어 생산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2.3. G20 제안서 핵심요지

12월 16일 G10 회원국에 회람된 G20의 관세 상한 등 6개 이슈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경사관세

선진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해당품목 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생우, 생우유 등을 주요 품목(Primary Product)으로 분류하고, 쌀의 경우 벼를 Primary로, 현미, 백미는 Processed로 분류하였다. 다만 리스트에 추가 또는 삭제 가능성은 열어두었으며, 대우는 Processed에 감축율의 1.3배를 적용하거나, 75% 감축을 적용하였다.

20)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 중에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 1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산동물

주요 품목	가공 품목
0101.90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경주용 말, 기타 말	0205.00 말, 당나귀, 노새, 버새고기(신선/냉장/냉동)
0102.90 젓소, 육우, 소 (기타)	0201.1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0201.2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절단한 것)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0202.3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0206.10 소식용설육(신선/냉장) 0206.21 소식용설육(혀/냉동) 0206.22 소식용설육(간장/냉동) 0206.29 소식용설육(꼬리/족/기타/냉동) 1602.50 소의것(밀폐용기의 것/기타조제저장)
0104.10 면양	0204.22 면양기타(쟁장/기타/뼈채로 절단) 0204.23 면양기타(냉장/뼈없는 것) 0204.30 어린면양(냉동/도체, 이분도체) 0204.41 면양(기타/냉동/도체와 이분도체) 0204.42 면양(기타/냉동/뼈채로 절단한 것) 0204.43 면양(기타/냉동/뼈없는 것)
0105 닭, 칠면조, 오리, 가금류	0207.12 닭고기(냉동/미절단) 0207.13 닭다리, 닭가슴, 닭날개, 닭기타절단육, 닭간장, 닭기타설육(냉장/냉동)
0106 기타 산동물	0208.10 토끼고기(신선/냉장/냉동) 0208.50 파충류의 것(신선/냉장/냉동) 0410.00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기타 2104.10 수프, 브로드, 제조품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2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우유

주요 품목	가공 품목
0401.10 밀크와 크림 (미농축/미첨가)	0402.10 탈지분유(농축/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이하) 0402.21 전지분유(농축/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초과) 0402.29 분유기타(설탕, 감미료 미첨가) 0402.91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미첨가) 0402.99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0403.10 요구르트(액상/냉동/기타)

(표 2 계속)

주요 품목	가공 품목		
0401.20	0403.90	밀크와 크림기타(버터밀크 포함)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	
	0404.90	유장기타	
	0405.10	버터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	
	0405.9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 지와 유	
	0401.30	0406.10	치즈와 커드(신선)
		0406.20	치즈와 커드(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0406.30	치즈와 커드(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0406.40	치즈와 커드(블루바인 치즈)
	0406.90	치즈와 커드(기타 치즈)	
	1702.11	유당과 유당시럽	
	3501.10	카세인	
	3502.20	밀크알부민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3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채소류

주요 품목	가공 품목		
0701.90	0710.10	감자(냉동)	
	1105.20	감자플레이크 및 펠리트	
	1108.13	전분(감자의 것)	
	2004.10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2005.20	감자(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조제저장처리)	
0702.00	2002.10	토마토(전체 또는 조각상/조제저장처리)	
	2002.90	토마토페이스트, 토마토기타 (조제저장처리)	
	2009.50	토마토쥬스	
	2103.20	토마토 케찹과 소스	
0703.10	양파와 쪽파(신선/냉장)	0712.20	양파(건조)
0709.20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2005.60	아스파라거스(조제저장처리)
0709.51	양송이버섯(신선/냉장)	0711.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일시저장처리)
		0712.31	양송이버섯, 기타버섯(건조)
		2003.10	양송이버섯, 기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조제저장처리)
0709.52	송로(신선/냉장)	2003.20	송로(조제저장처리)
0709.90	기타채소(올리브)	1509.90	올리브유(버어진)
		2005.70	올리브(조제저장처리)
0711.20	올리브(신선/냉장기타)	1509.10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기타)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4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과일류

주요 품목	가공 품목
0801.11 코코넛	1513.11 야자유(조유) 1513.19 야자유(정제유/기타) 2306.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오일케익 및 유박) 2308.00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0805.10 오렌지(신선/건조) 0805.20 맨더린	2009.11 오렌지주스(냉동) 2009.12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19 오렌지주스(기타) 2009.80 감귤류주스기타 2009.31 감귤류주스기타(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39 감귤류주스기타(기타) 3301.12 오렌지유
0805.40 그레이프프루트(신선/건조)	2009.21 그레이프프루트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29 그레이프프루트주스(기타)
0805.50 레몬(시트리스리몬, 시트리스리머늄)	2007.91 잼, 제리, 마멀레이트(감귤류) 2009.31 레몬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0806.10 포도(신선)	0806.20 포도(건조) 2009.61 포도주스(브릭스값이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69 포도주스(기타)
0808.10 사과(신선)	2007.99 사과 퓨레 0813.30 사과(건조) 2009.71 사과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09.79 사과주스(기타)
0804.30 파인애플(신선/건조)	2008.20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 2009.41 파인애플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0209.49 파인애플주스(기타)
0804.50 과아버, 망고(신선/건조)	2009.80 과아버, 망고 주스(기타)
0809.10 살구(신선)	2008.50 살구(조제저장처리)
0810.10 초본류딸기(신선)	0811.10 초본류딸기(냉동) 2007.99 딸기 잼 2008.80 딸리(조제저장처리)
08 과실과 견과류	2008.92 과실견과혼합물(조제저장처리) 2007.10 균질화조제품(퓨레, 페이스트) 2007.99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2009.80 과실주스 기타 2009.90 혼합주스(기타)
0808.20 마르멜로(신선)	2008.40 배(조제저장처리) 2009.80 과실주스 기타
0809.30 복숭아(넥타린포함/신선)	2008.70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 것/조제저장처리/넥타린 포함)
0809.40 자두(신선)	0813.20 프룬(건조)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5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향신료

주요 품목	가공 품목
0910.10 생강	2006.00 생강(설탕저장처리) 2008.99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6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커피

주요 품목	가공 품목
0901.11 커피(볶지 않은 것/ 카페인제거)	0901.12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제거) 0901.21 커피(볶음/카페인미제거) 0901.22 커피(볶음/카페인제거) 2101.11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7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곡물류

주요 품목	가공 품목
1001.10 밀(듀우럼종)	1101.00 밀과 메슬린 가루 1103.11 분쇄물, 조분(밀의 것)
1001.90 밀(기타)	1101 밀과 메슬린 가루 1103.11 분쇄물, 조분(밀의 것) 1103.20 펠리트(밀의 것) 1108.11 전분(밀의 것)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불문) 1902.11 스파게티, 마카로니, 파스타(기타) 1902.19 국수, 당면, 냉면, 파스타9기타(조제않음) 1902.20 파스타(속을 채움) 1902.30 파스타(기타) 1905.20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905.31 스위트 비스킷 1905.32 와플과 웨이퍼
1003 보리	11.03.19 분쇄물, 조분(보리의 것) 11.03.20 펠리트(보리의 것) 1104.19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1104.29 가공곡물(보리의 것) 1107.10 맥아(볶지 않은 것) 1107.20 맥아(훈연한 것/기타/볶음)
1004 귀리	1103.19 분쇄물, 조분(귀리의 것) 1103.20 펠리트(귀리의 것) 1104.12 압착플레이크(귀리의 것) 1104.22 가공곡물(귀리의 것)

(표 7 계속)

주요 품목	가공 품목
1005.90 옥수수	1102.20 옥수수가루
	1103.13 분쇄물, 조분(옥수수의 것)
	1108.12 전분(옥수수의 것)
	1901.10 조제식료품(기타)
	1901.20 베이커리제조용품(기타)
	1515.29 옥수수유(기타)
	1904.10 콘플레이크, 콘칩 등
1006.10 쌀	1006.20 메현미, 찰현미
	1006.30 멥쌀, 찹쌀
	1006.40 쇄미
	1102.30 쌀가루
	0904.10 조제식료품(곡물류의 것)
	0904.20 조제식료품(기타)
	2302.20 박류(쌀의 것)
1904.20 곡물조제식료품(기타)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8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Oilseed

주요 품목	가공 품목
1201.00 대두	1208.10 종자, 분, 조분(대두의 것)
	1507.10 대두유(조유)
	1507.90 대두유(정제유/기타)
	2304.00 오일케이크
1202.10 낙화생(미탈각)	1202.20 낙화생(탈각)
	12.08.90 종자, 분, 조분(기타)
	1508.10 낙화생유(조유)
	1508.90 낙화생유(정제유/기타)
2008.11 낙화생기타(조제저장처리)	
1205.10 저에루크산유채씨	1208.90 종자, 분, 조분(기타)
	1514.11 유채유와 그 분획물(정제유)
	1514.19 유채유와 그 분획물(기타)
1205.90 유채(기타)	1208.90 종자, 분, 조분(기타)
	1514.91 유채유(조유)
	1514.99 유채유(기타)
1206.00 해바라기씨(파쇄여부불문)	1512.11 해바라기씨유(조유)
	1512.19 해바라기씨유(기타)
1207.60 잇꽃씨	1208.90 종자, 분, 조분(기타)
	1512.11 잇꽃씨유(조유)
	1512.19 잇꽃씨유(기타)

(표 8 계속)

주요 품목	가공 품목
1207.10 팜넛과 핵	1208.90 종자, 분, 조분(기타) 1511.10 팜유(조유) 1511.90 팜유(기타)
1207.20 면실	1208.90 종자, 분, 조분(기타) 1512.21 면실유(조유) 1512.29 면실유(기타) 2306.10 면실의 것(오일케익 및 유박)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9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사탕수수

주요 품목	가공 품목
1701.11 사탕수수 1701.12 사탕무당	1701.91 사탕수수, 무당(기타/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9 사탕수수 무당 기타 1704 설탕과자 기타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 20% 이상 50% 미만) 2302.50 박류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10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코코아

주요 품목	가공 품목
1801.00 코코아두(볶은것과 볶지 아니한것)	1803.10 코코아페이스트(탈지하지 않은 것) 1803.20 코코아페이스트(전부 또는 일부 탈지) 1805.00 코코아분말(설탕 또는 감미료 미첨가) 1804.00 코코아버터(지와 유) 1806.10 코코아분말(설탕 또는 감미료 첨가) 1806.20 코코아조제품 1806.3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11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담배

주요 품목	가공 품목
2401.10 잎담배	2402.10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2402.20 권련(기타) 2403.10 파이프담배, 흡연용담배기타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표 12 G20이 제안한 경사관세 초안 목록 : 양모

주요 품목	가공 품목
5101.11 양모(깎은 것)	1505.00 조상의 울그리이스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2.3.2 관세 상한²¹⁾

Swiss Formula를 쓰는 비농산물협상(NAMA)²²⁾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산물에 상한(Capping)을 적용하였다. 선진국은 일반품목의 경우 100%, 민감품목의 경우 150%로 하고, 150% 관세 상한 대가로 해당품목에 X%의 추가 TRQ 증량을 하였다. 단 200% 상한을 설정할 수도 있으나 더 큰 TRQ 증량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경우 일반품목은 150%, 민감품목은 225%로 상한을 설정하였다.

표 13 G20이 제안한 민감품목의 관세상한

관세상한	선진국	개발도상국
비민감품목	100%	150%
민감품목	150%	225%

자료 : www.tradeobservatory.org

21)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2)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2.3.3. 국내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²³⁾

각국의 품목별 생산액 통계를 세부원칙(Modality)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²⁴⁾계산시 개도국은 총 20%를 제안하였고, OTDS 감축액도 양허표에 기재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협정문 관련조항(6조)의 개정 문안도 제시하였다.

표 14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국내 농업보조금의 기본 구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허용보조 (Green Box)
감축보조 (AMS)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과도기적 보조 (Blue Box)	

자료 :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 협상용어, 2007.

23) DDA 협상에서는 감축보조(AMS), 감축면제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 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DT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24) De-minimis는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성격이 같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한다.

나. 감축보조(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²⁵⁾

품목별 감축보조(AMS) 상한을 양허하고 관련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였다.

다. 블루박스(Blue Box)²⁶⁾

동 보조금의 한도를 양허하고 관련 협정문을 수정하였다.

2.3.4.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세부원칙(Modality)에 민감품목의 품목별(세목별)소비량통계를 첨부하였다. 미리 소비량 통계를 제시하지 않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선정이 불가능하다.

기준년도는 2003~05를 쓰되 특별한 경우 Olympic 평균을 사용하였다. Partial Designation 경우 TRQ 증량 기대수준(Level of Ambition)이 더 높아져야 한다.

TRQ 설정은 관련 관세 항목을 묶은 하나의 Single Basket으로 설정하였다. Global Safety Net으로 하한(Floor)을 설정하고, 특별긴급관세(SSG)²⁷⁾를 철폐하

25)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하였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가축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이다.

26)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는 감축보조(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변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이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7)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제도(SSG:Special Safeguard)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되 쿼타내 관세는 무세화하였다. 또한 수입쿼터 관리(TRQ administration) 관련 투명성(Transparency)과 Underfill 관련 부분을 보완하였다.

2.3.5. 관세 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²⁸⁾

알젠틴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였다.

3. 협상 전망

DDA 협상은 최근까지도 주요 4개국 장관회동 결렬 등 결정적인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7년 7월 이후 농업협상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된 이후 깊이 있는 협상을 통해 입장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다.

물론 관세 상한, 민감 품목, 개도국 특별품목 등 핵심 쟁점에서 아직까지도 주요 협상그룹 사이에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산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28)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증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증가상당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452ro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이다.

물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그룹을 형성,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입국모임인 세계 10대 선진국(G10)과 개도국 모임인 G33에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내년이 협상의 성공을 결정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 협상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농업 분야에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 상품들이 자국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우려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최종 협상 타결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DDA 협상의 성공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2월 초에는 지난 7월에 제시된 협상세부원칙의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논의된 결과를 모아 주요 쟁점별 숫자들을 소위 ‘착륙 범위’에 안착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미국 대선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미국 의회도 행정부에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상협상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⁹⁾.

29) 하영효, 또 하나의 통상전쟁 DDA, 파이낸셜뉴스, 2007. 12. 17.

4. 향후 일정³⁰⁾

- 12월 1~7일 : 소수국 회합
- 12월 7일~1월 3일 : 작업문서 제출
- 1월 3~11일: 소수국 회합
- 1월 21일 주간 : 의장 세부원칙 개정안 작성
- 1월 28일 주간 : 의장 세부원칙 개정안 각국에 배포

참고자료

- 김민아,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국제농업소식지 11월호, 2007. 11.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일본농업신문, 2007. 12. 5.
하영호, 또 하나의 통상전쟁 DDA, 파이낸셜뉴스, 2007. 12. 17.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244, 2007. 12. 7. 발췌정리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252, 2007. 12. 19. 발췌정리
www.tradeobservatory.org

30) 일본농업신문, 2007. 12. 5.